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김해 ○○○○○ 일반산단 진입로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미적용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남해군, 합천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게 공사 감독공무원,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 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의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2014. 3. 6.)에 따르면, 공사구간이 1Km 이상의 도로 신설 또는 확·포장공사와 포장면적이 9,000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 하수·분뇨처리시설공사, 폐수종말처리장,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 노상·노외주차장, 물류단지 등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적용 기간별 의무 사용량을 규정(2014년도는 제품사용량의 25% 이상, 2015년도는 30%이상, 2016년도는 40%이상)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 김해시 ○○○○과에서는 김해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4개 시·군에서는 [표 1]과 같이 추진하면서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미 적용하여 881백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이 과다 설계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순환골재의무사용량 미적용 현황

소계		창원		김해		밀양		남해		합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	881,845	17	131,255	13	155,631	13	470,687	3	4,459	3	119,813

※ 자료근거 :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작성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남해군수, 합천군수는

순환골재의무사용량 미적용 등 과다 설계된 공사비 881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